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확립 및 작동 가능성 평가를 위해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전북·전남)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 명확화(안 제1조의2)

- 1) 응급환자를 옮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평가, 응급처치, 의료기관 선정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송’으로 함
- 2) 응급환자에게 원인이 되는 질환 등의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최종진료’로 함

나. 응급의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 구체화(안 제1조의3)

- 1)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 2) 수용 불가 시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고지를 의무화하고, 구급

상황센터에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관 정보관리
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조치 등 신설(안 제2조의2)

- 1) 폭행, 협박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법률상담 및 치료비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안 제4조의2, 제8조의2)

- 1)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수용능력 확인, 우선수용 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2) 중증응급환자-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구급상황센터 등 중증도에 따른 이송병원 지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3)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정보, 정당한 사유의 고지에 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구급상황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 1)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병원이 신

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수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연계 향상 등을 위해 소방청 등 국가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바.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 기능 명확화(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중증-권역응급의료센터, 중등증-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지역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진료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환자 평가 및 관찰, 응급처치, 이송 의료기관 선정, 환자 인계 등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최종진료”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등을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

이어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거나, 사전 예약된 수술 등의 수행 예정 시간과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복되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③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내용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를 “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
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 치료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
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
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이하 “지역이송체계”
라 한다)를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
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관한 기준 및 그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
· 절차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법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법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25조제1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제6호·제8호의 업무에 제23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8조의5(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의 반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지원 내용 결정 등에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3 및 제23조의6으로 하고, 제23조의2,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수술·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의4(중양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중양응급의료센터를 중양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양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양응급의료상황

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의 가용 현황,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환자상태, 실시한 응급처치, 이송 대상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도착예정 시각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제5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로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

황센터의 결정에 따라 권역 외에서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
제24조의2(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진료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업무)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진료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은”을 “장, 제23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 선정.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u>1. “이송”이란 응급환자를 발생 현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급 차등을 이용하여 적정한 의료 기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 기 위한 환자 평가 및 관찰, 응급처치, 이송 의료기관 선 정, 환자 인계 등 일련의 행위 를 말한다.</u> <u>2. “최종진료”란 응급의료기관 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발생 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하여 응급환 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등을 말하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질환군별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u>
<u><신 설></u>	<u>제1조의3(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u>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의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이거나, 사전 예약된 수술 등의 수행 예정 시간과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복되어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② <u>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u> ③ <u>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내용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u> ④ <u>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
--	---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
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
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 법 제7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
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
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률상담,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
용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보호

<신 설>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이하 “지역이송체계”라 한다)를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에 관한 기준 및 그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

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미리 통보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 등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	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2. 중증도 분류결과 중등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법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법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 ----- 시·도
--	--

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지사-----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제23조의4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상황센터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고지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제8조의2 · 제8조의3 (생략)

<신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25조제1항
제3호 · 제5호 · 제9호 및 제27
조제2항제3호 · 제6호 · 제8호의
업무에 제23조의4제2항 · 제3항
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가
포함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8조의3 · 제8조의4 (현행 제8조
의2 및 제8조의3과 같음)

제8조의5(평가 절차 및 평가 결과
의 반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가
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
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신 설>

제23조의2 (생 략)

<신 설>

지원 내용 결정 등에 법 제17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수술·최종진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23조의4(중양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른 중양응급의료센터를 중양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양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양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그 밖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
기관의 인력·시설·장비의
가용 현황,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
급환자의 환자상태, 실시한 응
급처치, 이송 대상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도착예정 시각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
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
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
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
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이
하 이 조에서 “권역응급의료센
터 등”이라 한다)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

4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제5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중증응급환자 수용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업무연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23조의3 (생략)

<신설>

<신설>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
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로
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
의 결정에 따라 권역 외에서 이
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

제23조의6 (현행 제23조의3과 같음)

제24조의2(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응
급의료센터는 같은 조 제1항제1
호에 따라 중증도 분류결과 중
등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
의 응급의료 진료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3(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업무)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응
급의료기관은 같은 조 제1항제1
호에 따라 중증도 분류결과 경
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진료를 할 수 있다.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장,
제23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중양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4제2항 · 제3항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 선정.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무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8